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시험평가 및 선정 참여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등 방위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를 각각 추가함(안 제20조제2항제3호·제4호 신설).

-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공제 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구매 알선 등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 제1호).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구매 절차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시험평가 수행 또는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다만, 개정안은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두지 않아 이 법 시행 전에 착수되어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군수품 구매 절차 또는 기술혁신 사업 수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보상 대상

1) **안 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비용 보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칙 규정을 추가함.

부 칙

제2조(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